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26

발의연월일: 2025. 3. 14.

발 의 자:이정헌·허성무·박홍배

박민규·채현일·박지원

김승원 · 정동영 · 임호선

김영환 · 박용갑 · 황정아

강준현 · 김우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 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 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 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 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 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시책"을 "시책 및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국제공동연구의"를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의"로 한다.

- 8.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 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 원사업의 추진
- 3. 주요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 4. 주요 전문분야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수요 및 활용 등에 관한 실

태조사

- 5.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 6.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이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과학기술자의 외국 파견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성과 등 주요정보 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 2. 연구개발 관련 정보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 3.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	①
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	
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	
련 기관・단체 등과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
	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
	<u>진</u>
<u><신 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
	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
	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
	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신 설>

-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 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 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 3. 주요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 4. 주요 전문분야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수요 및 활용 등에관한 실태조사
- 5.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 6.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 과학기술 자의 외국 파견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
- ④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 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 •단체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성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u>국제공동연구의</u>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u>수 있다.</u>
1.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조
<u>치</u>
2. 연구개발 관련 정보 및 연구
개발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u>⑤</u>
제1항 및 제2항
<u>시책 및 사업</u>
<u>⑥</u> 제5항
그 바세 구게고도어그이